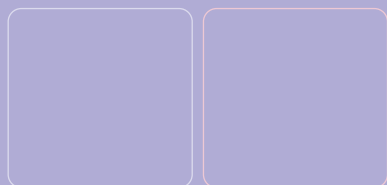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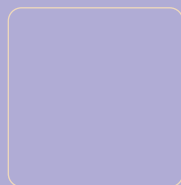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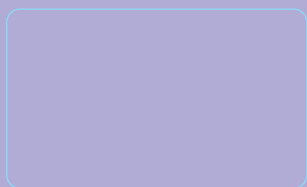
캐나다의 육아지원정책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을 중심으로

| 신나리 조혜주 편역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KICCE

육아정책개발센터

캐나다의 육아지원정책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을 중심으로

| 신나리 조혜주 편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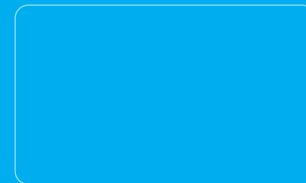
캐나다의 육아지원정책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을 중심으로

| 신나리 조혜주 편역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발간사

최근 들어 많은 국가들이 육아지원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인구 감소의 위기와 여성경제 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정책으로서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육아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함과 더불어 좀 더 효과적인 육아지원정책 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인적 자원의 육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며, 인생 초기 영유아기 성장과 발달에 대한 지원이 여타 시기의 지원보다 효과적 일뿐더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요 선진국에서의 실증적 연구 결과들 때문에도 영유아기 육아지원을 위한 세부 정책들을 마련하고 또한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연속 간행될 세계의 육아정책 동향은 각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근 육아정책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소개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06년도에는 일본과 스웨덴, 2007년도에는 호주와 영국의 육아정책을 소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미국의 육아정책을 시작으로 육아 선진국들의 육아지원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왔습니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육아정책 정보들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세부 육아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1장

캐나다의 육아지원 관련 특성

1. 캐나다의 일반적 특성 • 04
2. 캐나다의 육아지원 관련 사회적 특성 • 08

2장

캐나다 육아지원정책의 개관

1. 육아지원의 역사적 배경 • 22
2. 육아지원 서비스의 유형 • 24

3장

유치원: 주정부의 학교체제 내 육아지원 서비스

1. 법적 근거 및 주무부처 • 26
2. 비용 및 재정 지원 • 27
3. 원아수 • 29
4. 프로그램 운영 • 31
5. 교사 • 33

4장

보육시설: 주정부의 관련법 하의 육아지원 서비스

1. 법적 근거 및 주무부처 • 35
2. 비용 및 재정지원 • 36
3. 서비스 유형 및 이용 아동수 • 39
4. 설치 및 관리감독 • 43
5. 교사 • 45

5장

맺는 말 • • 48

참고 문헌

• • 51

캐나다의 육아지원 관련 특성

1. 캐나다의 일반적 특성

가. 지리적 특성

북아메리카 대륙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캐나다는 국토 내에 걸쳐진 표준시간이 6개에 이를 정도로 넓은 나라이며, 이는 세계에서 2번째로 넓은 나라이다. 총 면적이 9,984,670km²가량이지만 북쪽은 북극의 일부와 면해있고, 산악지대나 한대기후에 속하는 지역이 많아 실제 사용되는 면적은 전체 영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 인구

2006년 캐나다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인구는 약 31.6만 명가량으로, 2001년 인구와 비교하여 볼 때 5.4% 가량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

다(Statistics Canada, 2006c). 그러나 인구밀도로 환산해보면 1km² 내 3.1명으로, 이는 산업화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낮은 인구밀도에 비해 지역 간 인구밀도는 매우 다양하다. 캐나다의 경우 전체 인구 중 도시거주 인구의 비율이 약 78%이다. 대표적인 인구 밀집 지역으로는 (1) 토론토를 중심으로 한 북부 온타리오주, (2) 몬트리올과 주변부, (3) 밴쿠버와 주변부, 그리고 (4) 캘거리-에드몬튼 간 기차노선 지역의 4개 지역으로 캐나다 국토의 서남부에 해당하는 이들 지역에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 거주하고 있다. 반면 농촌벽지 지역과 북부 지역은 1km² 내 평균 3.1명 보다 매우 낮은 인구밀도를 보인다.

〈표 1〉 캐나다의 인구

| 주/준주 | 2001년 | 2006년 |
|---|------------|------------|
| Newfoundland and Labrador (뉴펀들랜드 & 라브라도 주) | 512,930 | 505,469 |
| Prince Edward Island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 135,294 | 135,851 |
| Nova Scotia (노바스코샤 주) | 908,007 | 913,462 |
| New Brunswick (뉴브런스윅 주) | 729,498 | 729,997 |
| Quebec (퀘벡 주) | 7,237,479 | 7,546,131 |
| Ontario (온타리오 주) | 11,410,046 | 12,160,282 |
| Saskatchewan (사스카추완 주) | 978,933 | 968,157 |

단위: 명

| 주/준주 | 2001년 | 2006년 |
|-------------------------------------|------------|------------|
| Alberta (알버타 주) | 2,974,807 | 3,290,350 |
| British Columbia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 3,907,738 | 4,113,487 |
| Yukon Territory (유콘 준주) | 37,360 | 41,464 |
| Northwest Territories (노스웨스트 준주) | 26,745 | 29,474 |
| Nunavut (누나부트 준주) | 28,674 | 30,372 |
| 전체 | 30,007,094 | 31,612,897 |

자료: Statistics Canada, (2006b). Population and dwelling counts, for Canada, provinces and territories, 2006 and 2001 censuses-100% data

캐나다 인구는 주로 18세기 중반 프랑스나 영국으로부터 건너온 식민지 개척자들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영국계가 28%, 프랑스계가 23%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비 유럽계 나라로부터 이주자들이 약 15% 가량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1990년대에는 아시아와 중동지역 출신 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로 이 지역 출신 이민자는 전체 인구의 약 6%에 이르고 있다(Statistics Canada, 2006b). 한편, 인구 저밀도 지역인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3% 가량의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다. 언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캐나다의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다. 이

러한 2개 언어의 사용은 캐나다에 이 두 국가의 이주민이 이주하게 된 것과 관계가 있으며, 전체 캐나다 인구의 약 6.5만명(약 22%)은 프랑스어를 약 16.8만명(57%)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다(Statistics Canada, 2006a).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캐나다 전체 주에 걸쳐 있으며,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퀘벡 주, 뉴브런스윅 주, 온타리오 주, 마니토바 주 일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표2〉 참조).

〈표2〉 캐나다의 지역별 공용어

| 영어권 (9개 주/준주) | 불어권 (4개 주/준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wfoundland and Labrador(뉴펀들랜드 & 라브라도 주) • Prince Edward Island(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 Nova Scotia(노바스코샤 주) • Saskatchewan(사스카추완 주) • Alberta(알버타 주) • British Columbia(브리티시 컬럼비아주) • Yukon Territory(유콘 준주) • Northwest Territories(노스웨스트 준주) • Nunavut(누나부트 준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uebec(퀘벡 주) • New Brunswick(뉴브런스윅 주) • Ontario(온타리오주) • Manitoba(마니토바주) |

자료 : <http://www.thecanadianencyclopedia.com>

라. 행정체제

캐나다는 10개의 주(provinces)와 3개의 준주(territories)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정부이다. 주의 경우 독립된 주법이 있으나, 준주의 경우에는 주법이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법으로 통치가 된다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연방정부는 발전과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

요한 문제들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는 헌법, 국방, 외교, 원주민 문제, 금융 및 우편, 결혼과 이혼 등을 관리하고 있다. 반면, 주정부는 지역공동체를 보호하고 일상적 삶을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 보건, 복지 등의 각종 사회서비스 및 인허가, 교통, 치안 등을 관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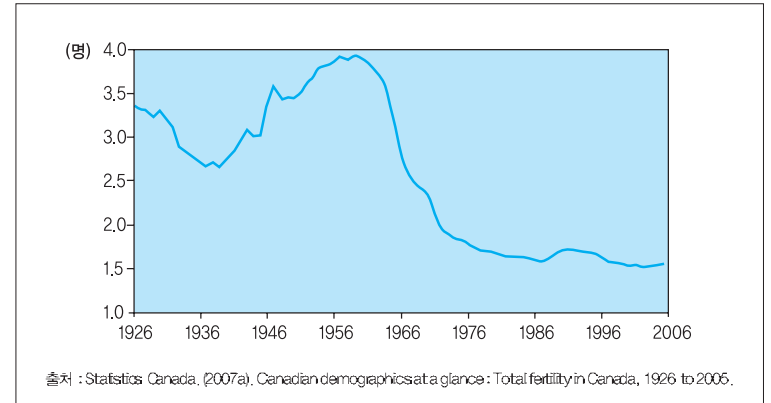
2. 캐나다의 육아지원 관련 사회적 특성

가. 저출산

1960년대 초반 캐나다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그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 1인당 출산하는 아동의 수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2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캐나다의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국가 지속발전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Friendly et al., 2007).

지난 2006년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1년간 캐나다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수를 보면 약 35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동년도 우리나라의 출생아수보다 현저하게 적다(〈표 3〉 참조).

1) 이민, 농업, 천연 자원, 환경은 연방과 주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함.



[그림 1] 캐나다의 출산율(1926~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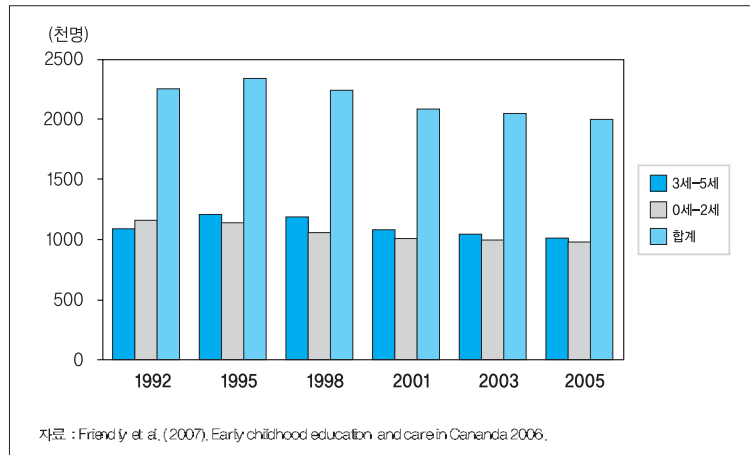
〈표 3〉 캐나다의 지역별 출생아수(2006/07)

| 주/준주 | 출생아수 |
|---|---------|
| Newfoundland and Labrador (뉴펀들랜드 & 라브라도 주) | 4,386 |
| Prince Edward Island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 1,420 |
| Nova Scotia (노비스코샤 주) | 8,372 |
| New Brunswick (뉴브런스윅 주) | 6,918 |
| Quebec (퀘벡 주) | 85,900 |
| Ontario (온타리오주) | 136,217 |
| Manitoba (마니토바주) | 14,801 |
| Saskatchewan (사스카추완 주) | 12,674 |
| Alberta (알버타주) | 47,579 |

| 주/준주 | 출생아수 |
|-------------------------------------|---------|
| British Columbia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 43,980 |
| Yukon Territory (유콘 준주) | 355 |
| Northwest Territories (노스웨스트 준주) | 695 |
| Nunavut (누나부트 준주) | 788 |
| 전체 | 364,085 |

주 :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 기준임.
출처 : Statistics Canada, (2008) . Components of population growth, by provinces and territories: Table051-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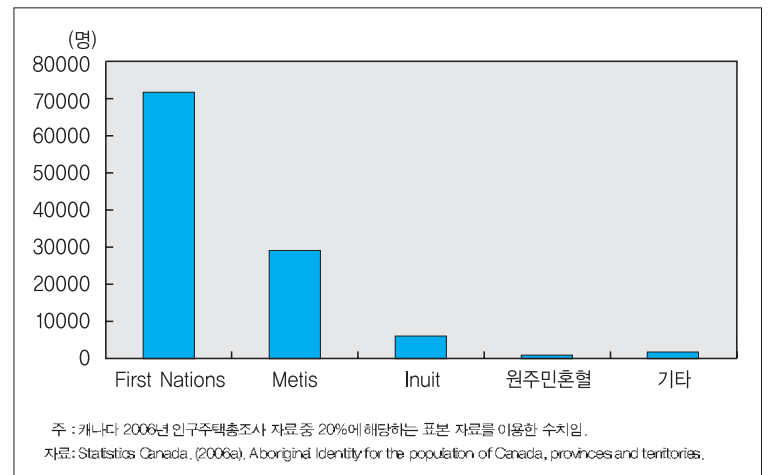
이에 육아지원의 대상이 되는 0세부터 만 5세 사이의 영유아 수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에는 5세 이하 영유아수가 2백 2십만 명을 상회하였으나, 2005년에 이르러서는 2백만을 다소 넘는 상황이다.



[그림 2] 캐나다의 영유아수 추이(1992-2005)

나. 캐나다 원주민의 높은 출산율과 도시 이주

소위 Aboriginal people이라고 불리는 캐나다 원주민은 1982년 제정된 Constitution Act에 따라 First Nations, Metis, Inuit로 구분된다. 이 중 캐나다 인디언인 First Nations가 전체 캐나다 원주민 중 약 70%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 영국 식민지 개척시대에 유럽과의 모피무역의 중심이었던 Metis는 약 25%, 그리고 캐나다 원주민과 이민자의 혼혈족인 Inuit는 약 5%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육아지원의 대상이 되는 5세 이하의 원주민 영유아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캐나다 원주민 영유아수(2006)

캐나다 전체인구의 3-4% 가량을 차지하는 원주민은 캐나다의 육아지원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지는 캐나다의 인구

추이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수는 캐나다 다른 인구수의 증가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6년부터 2001년 사이 원주민 인구는 22.2% 증가한데 반해 그 외 인구의 증가율은 3.4%에 지나지 않았다. 2001년 원주민의 각 연령별 인구 통계를 보면, 원주민 전체의 35%를 14세 이하 아동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그 외 인구수의 경우 동 연령 집단이 19%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매우 큰 수치임을 알 수 있다(Statistics Canada, 2003).

전반적인 인구수의 증가와 더불어 또 다른 캐나다 원주민의 특성은 도시지역으로의 이주이다. 전통적으로 원주민들은 마니토바 주와 사스카추완 주 등 몇몇 지역에서 정착하여왔다. 그러나 2003년 통계에 따르면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살고 있는 인구가 전체의 31%에 불과하며,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중 농촌지역에 사는 비율이 약 2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즉, 원주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49% 정도가 도시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같은 원주민 인구의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증가는 육아지원기관과 관련된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적으로 다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원주민가정의 영유아 통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다. 이민인구의 증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캐나다는 출산율 감소와 노령화 추세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이민정책을 장려하여 왔다. 2001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8.3%에 해당하여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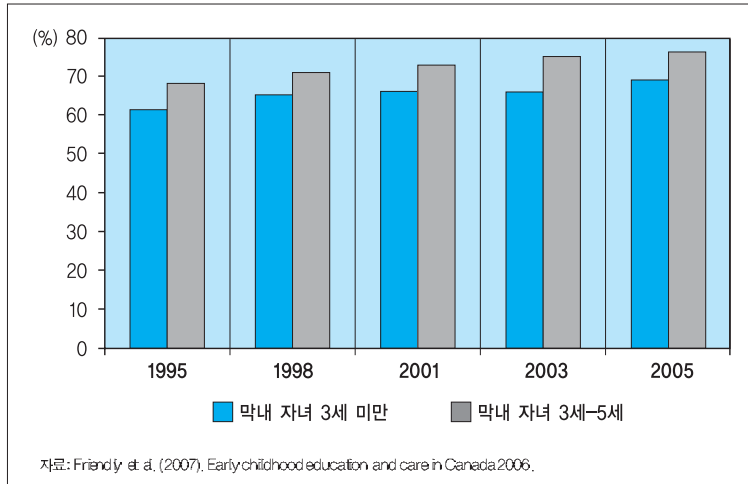
년 17.4%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이민인구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지난 1991년부터 1996년 사이 캐나다 본토 인구수의 증가 비율이 4%에 그치는 반면 이민으로 인해 유입된 인구수 증가 비율은 15.5%에 육박하여, 증가율 또한 3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Doherty, Friendly, & Beach, 2003).

이 같은 이민인구 유입이 육아지원정책의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민가구에 영유아 자녀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 이민가구 아동 중 2/3 가량은 영어나 불어를 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Canadian Council on Social Development, 2002). 또한 대부분의 이민가구는 캐나다의 여러 도시 중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켈거리 등 대도시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Statistics Canada, 2003). 이로 인해 이들 대도시에 소재한 유치원 중에는 타국에서 출생하여 캐나다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아가 전체 원아의 반수 가량 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Larose, Terrisse, Bedard, & Karsenti, 2001). 결과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언어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매우 다른 이민가정을 대상으로 새로운 주류사회에 대한 적응과 다문화가정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1970년대 이후 경제활동 참가가 남성 중심이었던 전통적인 경향을 벗어나 캐나다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캐나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도 급속도로 늘어나,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집중해왔던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해가 거듭될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현재 막내 자녀가 3세 미만인 기혼여성의 약 69%가 취업 중이며, 3-5세 사이 유아를 막내로 둔 여성의 취업률은 무려 76%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림 4] 캐나다의 취업모 비율 추이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 또한 육아휴직과 같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관심을 두고 활성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유아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취업 비율을 지역별로 제시한 <표 4>를 보면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의 경우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노바스코샤주와 퀘벡 주 또한 취업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캐나다의 10개 주 중 대부분의 주에서 35-37주가량의 육아휴직이 가능한 반면 위의 3개 주는 육아휴직이 52주까지 사용 가능한 것이 높은 취업모

비율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 캐나다의 지역별 취업모 현황(2005)

| 주/준주 | 단위: 명(%) | |
|--|---------------------|--------------------|
| | 막내 자녀가 0-2 세인 취업모 수 | 막내 자녀가 3-5세인 취업모 수 |
| Newfoundland and Labrador (뉴펀들랜드 & 라브라도 주) | 7,800(65.5) | 7,300(71.6) |
| Prince Edward Island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 2,900(80.6) | 2,100(84.0) |
| Nova Scotia (노바스코샤 주) | 16,300(76.2) | 12,500(76.7) |
| New Brunswick (뉴브런스윅 주) | 12,800(71.3) | 12,200(79.7) |
| Quebec (퀘벡 주) | 141,600(74.1) | 114,700(78.5) |
| Ontario (온타리오주) | 249,800(69.4) | 194,100(75.6) |
| Manitoba (마니토바주) | 21,600(63.9) | 16,400(76.3) |
| Saskatchewan (사스카추완 주) | 19,300(67.0) | 14,400(76.9) |
| Alberta (알버타주) | 63,200(62.5) | 42,800(68.7) |
| British Columbia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 65,900(64.3) | 54,600(75.7) |
| Yukon Territory (유콘준주) | - | - |
| Northwest Territories (노스웨스트 준주) | - | - |
| Nunavut (누나부트준주) | - | - |
| 전체 | 601,300(68.9) | 470,700(75.8) |

출처 : Friendly et al. (2007),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Canada 2006.

마. 저소득 한부모 가정 내 자녀 증가

2001년 현재 캐나다 가구 중 약 16%가 한부모 가정으로, 이는 1971년 10% 정도의 가구가 한부모 가정이었다던 수치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캐나다내에서 한부모 가정의 수가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001년 통계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 중 약 20%(268,005가구)는 5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인 것으로 보고되어(Statistics Canada, 2002), 한부모 가정 내 자녀의 증가 또한 매우 특징적인 육아환경의 변화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한부모 가정 중 모자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되는 비율이 높다는 데 있다. 2002년 현재 한부모 가정 중 어머니가 3세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경우가 약 47%에 불과하여, 동 연령의 영아를 둔 양부모 가정 어머니의 취업비율(62.3%)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3-5세 유아 가정에서도 유사하여, 유아가 있는 한부모 가정 중 어머니가 취업한 비

〈표 5〉 캐나다의 소득수준별 모자가정 수 및 비율(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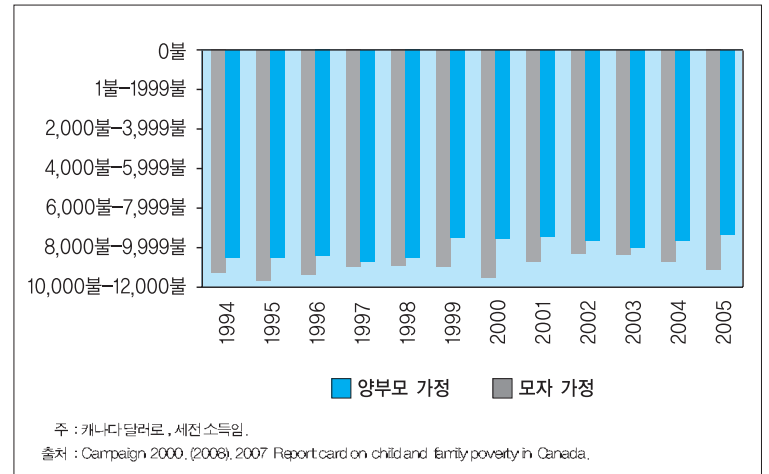
단위: 가구, %

| 연소득 | 모자가정수 | 모자가정 중 취업모 가정 비율 |
|----------------|---------|------------------|
| 1만불미만 | 251,000 | 55 |
| 1만불 이상-1만5천불미만 | 32,800 | 7 |
| 1만5천불 이상-2만불미만 | 22,500 | 5 |
| 2만불 이상-3만불미만 | 46,200 | 10 |
| 3만불 이상-4만불미만 | 48,600 | 11 |
| 4만불 이상-5만불미만 | 25,000 | 5 |
| 5만불 이상 | 31,100 | 7 |

주 : 캐나다 달러임.
출처 : OECD, (2004b),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Canada country note.

율은 60% 정도이나 양부모 가정 어머니의 취업비율은 70%이다.

더욱이 여성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수입 면에서 직업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부모 모자가정의 반수 이상이 연 수입 만 불 이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계 수입 수준은 한부모 모자가정의 경우 자녀의 보육비용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모자가정이 캐나다 전체 가구의 1/6 정도만을 차지하는 반면, 빈곤층의 경우 거의 반수에 가까운 가구가 모자가정이라는 점은 여성 한부모 가정 내 영유아가 취약한 가족구조 내에서 빈곤을 세습하지 않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육아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한다(그림 5 참조).



〈그림 5〉 캐나다 빈곤층 가구의 가족 구조에 따른 평균 소득(1994-2005)

바. 평일 정규 근무시간 외 근무자 증가

지난 20년간 캐나다의 산업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여, 노동자의 80% 가량이 서비스업이나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통상 이해되고 있는 정규 근무시간 외 휴일 근무, 3교대 근무를 하는 근무자의 증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의 증가는 시간제 근무자 또는 자영업과 같은 무급 가족업자의 비율이 높은 기혼여성들에게서 두드러진다(Doherty, Friendly, & Beach, 2003). 이에 따라 정규 보육시간 외에도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24시간보육 등과 같이 이들 취업모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융통성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시간과 더불어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의 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정착

여러 사회적인 변화와 요구에 의해 캐나다의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는 점차 정착되어가고 있다.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기간과 조건은 통상 주정부에서 정하며, 연방정부는 고용보험의 운용을 통한 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캐나다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까지 대상이 되는 family leave의 형태이며, 부부가 출산한 자녀뿐 아니라 아동 입양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의 소득과 고용이 보장되는 캐나다의 육아휴

직은 육아 관련 정책이라기보다는 직장의 복리후생 중 하나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연방정부에서 관장하는 휴직급여는 다음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전후휴가의 경우 15주까지, 육아휴직의 경우 35주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휴직급여액은 신고소득액의 55%까지 지급 가능하되 주당 최대 지급액이 2002년 현재 413불까지로 되어있다. 2001/2002 회기년도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건수는 여성근로자 211,270명, 남성근로자 23,120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중 84%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이 중 86.2%는 사용가능한 급여기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캐나다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2002)

| 구분 | 해당아동연령 | 수급조건 | 수급내용 |
|-----------|---|---|---|
| 산전후휴가 | 임신부터 생후 12개월 까지임. | 고용보험에 12개월 이상 가입하였고, 현 사업장에서 600시간 이상 일한 어머니. 단 사전에 해당 급여를 수급한 경우가 가장 최근 수급이 12개월 이전이어야함. | 15주 동안 임금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되, 주당 최고 413불까지 가능함. |
| 육아휴직/입양휴직 | 어머니의 경우 산전후 휴가직후부터, 아버지의 경우 자녀 출생 이후 12개월까지임. 단 입양휴직은 해당 아동 연령이 상관없음. | 고용보험에 12개월 이상 가입하였고, 현 사업장에서 600시간 이상 일한 어머니와 아버지. 단 사전에 해당 급여를 수급한 경우 가장 최근 수급이 12개월 이전이어야함. | 35주 동안 임금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되, 주당 최고 413불까지 가능함. |

출처 : OECD, (2004b).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Canada country note.

이 같은 고용보험을 통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은 캐나다에서 지속적으로 정착 및 확대되고 있는 중인데, 가장 큰 이유는 육아휴직이 모성보호 측면에서 어머니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보육재정 투입보다 그 규모가 작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취업모 중 자영업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여전히 육아휴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현 캐나다 육아휴직제도의 제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주정부가 권장하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그리고 입양휴직의 기간과 조건은 다음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산전후휴가의 경우 2006년 현재 3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준주에서 17주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주정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은 주정부에 따라 35주부터 52주까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근로자와 산전후휴가와와의 연결 여부,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주별로 상이하다. 한편 입양휴직의 경우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37주가량 사용이 가능하다.

<표 7> 캐나다의 지역별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및 조건(2006)

| 주/준주 |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입양휴직 |
|---|-------|---------------------------------------|---------------------------------|
| Newfoundland and Labrador (뉴펀들랜드 및 라브라도 주) | 17주 | 부부 각각 35주 사용가능함. | 17주. 입양휴직 사용 이후 육아휴직 35주 사용가능함. |
| Prince Edward Island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 17주 | 35주.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총 35주를 넘지 못함. | 부부 합산 52주 |

| 주/준주 |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입양휴직 |
|-------------------------------------|-------|---|---|
| Nova Scotia (노바스코샤 주) | 17주 | 부부 각각 52주 사용가능. 단 자녀 생후 1년까지 사용가능하며,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는 35주 사용가능함. | 52주 |
| New Brunswick (뉴브런스윅 주) | 17주 | 정식 명칭은 아동양육휴직(child care leave)임. 부부 함께 37주 사용가능. 산전후휴가와 합산하여 52주까지 사용가능함. | 37주 |
| Quebec (퀘벡 주) | 18주 | 52주 | 육아휴직과 동일 |
| Ontario (온타리오 주) | 17주 | 산전후휴가 사용한 여성근로자 35주. 남성근로자 37주. 부부가 연속으로 사용가능함. | 37주 |
| Manitoba (마니토바 주) | 17주 | 부부 각각 37주 사용가능함. | 37주 |
| Saskatchewan (사스카추완 주) | 18주 | 산전후휴가 사용한 여성근로자 34주. 남성근로자 37주. 부부가 연속으로 사용가능함. | 주양육자는 육아휴직과 연결하여 18주 사용가능. 배우자는 연속으로 37주 사용가능함. |
| Alberta (알버타 주) | 15주 | 37주 범위 내에서 한명 혹은 부부가 나누어서 사용 가능. 그러나 휴직기간은 37주 넘지 못함. | 37주 |
| British Columbia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 17주 | 산전후휴가 사용한 여성근로자 35주. 산전후휴가 사용하지 않은 여성근로자 37주. 남성근로자 37주. 단 단 자녀 생후 52주까지 사용가능함. | 37주 |
| Northwest Territories (노스웨스트 준주) | 17주 | 부부 함께 37주 사용. 산전후휴가와 연속하여 52주 사용가능함. | 37주 |
| Nunavut (누나부트 준주) | 17주 | 부부 함께 37주 사용. 산전후휴가와 연속하여 52주 사용가능함. | 37주 |
| Yukon Territory (유콘 준주) | 17주 | 37주.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불가능함. | 37주 |

자료 : Friendly et al. (2007),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Canada 2006.

캐나다 육아지원 정책의 개관

1. 육아지원의 역사적 배경²⁾

1800년대 중반 캐나다에서는 영국의 사회개혁 운동가인 Robert Owen의 아동 권익 및 교육 철학에 기초한 유아학교(infant school)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어 유치원이 캐나다 도처에서 설립되었고, 이는 자선 단체에 의해 '무상 유치원 교육' 운동으로 발전되어 사회 개혁을 주도하고 이민자 가정 아동의 사회적응을 돕고자 하였다(Prochner, 2000). 1885년 Ontario주 Toronto 교육위원회에 의해 역사상 첫 번째 공립 유치원이 설립된 이후, 캐나다에서 유치원은 주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2) 본 절은 Friendly(2008)에서 요약·발췌하였음.

한편 캐나다의 보육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다. 1800년대 Toronto와 Montreal에서 시작되어 1920년에 이르러 캐나다 전역에서 탁아소(creches)가 시작되었다. 이 당시의 탁아소는 주로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저소득층 여성 노동자를 위한 것으로서, 주로 영아를 대상으로 교회나 여성자선단체에 의해 운영되었다. 그러나 유치원과는 달리 탁아소 운영에 관한 주정부의 개입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2차 세계대전이 되어서야 군수산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여성을 위한 자구책으로 각 주정부에서 탁아소 운영에 재정을 투입할 것을 연방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또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움직임은 군수산업이 성행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시 중 농촌지역의 탁아소는 Ontario와 Quebec에만 운영되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에도 탁아에 대한 주정부 지원은 지속되어 1946년 캐나다의 첫 번째 보육 관련법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66년 연방정부에 의해 시작된 전후 사회재건 프로그램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탁아가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보육사업에 연방정부의 재정이 지원되는 시발점이 되었다.³⁾

이상과 같이 독립적으로 발전하게 된 캐나다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오늘날까지 이원화된 체제로 지속되고 있다. 현재 보육시설은 취업모의 자녀를 위한 시설로서 전국에 보급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유치원은 1980년대 이후부터 대부분 공립교육기관으로서 운영되고

3) 이는 Canada Assistance Plan(CAP)에 따른 것임. CAP는 1996년까지 무려 30년 동안 지속되었음.

있다. 이에 근거법, 주무부처, 재정지원, 기관운영 및 교사자격에 이르기까지 독립된 형태로 이원화되어 있다.

2. 육아지원 서비스의 유형

캐나다의 의무교육은 일반적으로 만 6세부터 시작되므로, 학령기 아동을 위한 일부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캐나다에서 제공되는 육아지원 서비스는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캐나다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된 상황으로, 캐나다의 육아지원서비스는 미취업모 가정의 5세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치원과 취업모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로 크게 분류된다. 이 외에 유아원 등의 기타 서비스가 주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OECD, 2004b). 이 밖에 약 60%에 해당하는 영유아는 관리·감독의 대상이 아닌 개별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친인척, 이웃 탁아모 등에 의해 제공받고 있다.

연방국가인 캐나다의 육아지원은 주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련법과 정책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 수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가 없으므로 캐나다의 육아지원은 주정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Espinger-Anderson 이 제시한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중 육아와 관련된 사회의 책임

을 가장 덜 강조하는 시장원리 중심의 '자유주의형 국가'에 해당하므로 육아지원 서비스의 수요자인 가정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공존하고 있다(Friendly, 2008). 이러한 캐나다의 육아지원과 관련한 특성은 10개 주 및 3개 준주에 따라 비교적 특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4) 연방정부 및 주정부 간의 보다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해 지난 1999년도에 체결된 협약인 'Social Union Framework Agreement(SUFA)' 을 통해 새롭게 구상되는 사회 프로그램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초기부터 공동 작업을 하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공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이에 2003년도 Multilateral Framework on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ELCC) 프로그램이 이 협약에 근거하여 수행된 바 있음.

유치원: 주정부의 학교 체제 내 육아지원 서비스

1. 법적 근거 및 주무부처

캐나다의 유치원(kindergarten)은 만 5세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의 일부로서, 주정부의 교육법(또는 학교법)과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해서 운영된다. 각 주정부는 교육법(또는 학교법)에 따라 교육부를 정부조직에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지역 교육청(school board) 또는 교육국(divisions)에 의해 교육제반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⁵⁾ 지역 장학관의 경우 제정, 교직원 임용, 교육 프로그램 및 제반 사항 장학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단,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에서는 보육시설

5)뉴브런스윅주 의 경우 교육청 또는 교육국의 사무를 지역 교육위원회(District Education Council)에서 관장하고 있음.

법(Child Care Facilities Act)에 근거하여 보건사회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가 유치원 허가, 교사 자격, 재정 등의 교육부의 유아교육 관련 사무를 함께 관장하고 있다.

2. 비용 및 재정 지원

캐나다의 유치원은 주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공립유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캐나다의 유치원을 이용하기 위한 부모의 수업료 부담은 없다. 이에 유아교육에 지원되는 재정의 규모도 비교적 큰 편이나, 각 주/준주별 유아교육 재정에 관한 통계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캐나다 전체의 유아교육 관련 재정 지원 규모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Friendly와 동료들(2007)이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수합하였으며 결과는 다음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표에 따르면 영유아 인구수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 주의 유아교육 지원 규모 총액이 4세와 5세를 모두 합쳐 약 10억 불이 넘으며, 인구수가 가장 적은 주정부 중 하나인 노스웨스트 준주의 경우 약 4백만 불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총 지원액의 규모는 제공되지 않으나 유아당 지원액을 환산한 통계자료는 각 주정부로부터 비교적 상세히 제공되고 있는데, 지원액이 가장 낮은 퀘벡 주의 경우는 연간 유치원 이용 아동 1인당 1천불에서 2천불 사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준주에서는

연간 5천불 이상의 재정이 유치원 원아 1인을 위해 지원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노스웨스트 주, 누나부트 주, 유콘 준주의 아동당 지원액은 1만불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어, 유아교육 관련 재정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

(표 8) 캐나다의 지역별 유치원 재정 지원 현황(2006)

단위: CAD(Canadian Dollar)

| 주/준주 | 총 지원액 | 아동당 지원액 |
|---|--------------------------|--|
| Newfoundland and Labrador (뉴펀들랜드 & 라브라도 주) | - | 7,879(유초중등 학생 전체) |
| Prince Edward Island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 3.1M | 2,193 |
| Nova Scotia (노바스코샤 주) | - | 5,967(유초중등 정규 학생 전체) |
| New Brunswick (뉴브론스윅 주) | - | 6,911 |
| Quebec (퀘벡 주) | - | 1,728(5세) 2,124(4세 pre-maternelle) 1,020(4세 passe-partout) |
| Ontario (온타리오 주) | 535.9M(5세) 504.9M(4세) | 4,320(5세) 4,320(4세) |
| Manitoba (마니토바 주) | - | 4,233(5세) * |
| Saskatchewan (사스카츄원 주) | - | 2,400(5세) 3,022(4세) |
| Alberta (알버타 주) | - | 2,544 |
| British Columbia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 1,115M | 5,520(정규 이용) 2,760(시간제 이용) |
| Northwest Territories (노스웨스트 준주) | 4.2M | 13,400(유초중등 정규 학생 전체) |

| 주/준주 | 총 지원액 | 아동당 지원액 |
|----------------------------|-------|-----------------------|
| Nunavut (누나부트 준주) | - | 10,521(유초중등 정규 학생 전체) |
| Yukon Territory (유콘 준주) | - | 12,581(유초중등 학생 전체) |

* 추정치임.

자료 : Friendly et al. (2007).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Canada 2006.

3. 원아수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캐나다의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그러나 캐나다 5세 아동의 95% 정도는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온타리오 주와 같이 4세 유아의 대부분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도 있다.

각 주/준주별로 유치원 원아수를 살펴보면(〈표 9〉 참조), 5세 이하 영유아 인구수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 주의 경우 2003/04년 기준으로 약 12만 7천명을 상회하는 5세 유아가 유치원을 이용하였으며, 퀘벡 주의 경우 공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이용 원아까지 합산하여 보면 약 7만 3천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5세 이하 영유아수가 2천명이 안 되는 유콘 준주의 경우 유치원을 이용하는 5세가 400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표 9〉 캐나다의 지역별 유치원 원아수(2006)

단위: 명

| 주/준주 | 인구수(0-5세) | 유치원 이용 유아수 | |
|---|-----------|-------------------------|---|
| | | 5세 | 4세 |
| Newfoundland and Labrador (뉴펀들랜드 & 라브라도 주) | 22,860 | 4,956 | - |
| Prince Edward Island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 6,690 | 1,409 | - |
| Nova Scotia (노바스코샤주) | 42,040 | 9,066(공립) | - |
| New Brunswick (뉴브론스윅주) | 34,430 | 7,451 | - |
| Quebec (퀘벡 주) | 375,270 | 69,000(공립) 4,735(사립) | 6,103(pre-maternelle) 8,500(passe-partout) |
| Ontario (온타리오 주) ¹ | 670,770 | 127,571 | 113,053 |
| Manitoba (마니토바 주) | 68,100 | 12,034(공립) 761(기타) | 2,127(공립) 375(기타) |
| Saskatchewan (사스카추원주) | 57,495 | 10,552 | 1,600 ² |
| Alberta (알버타 주) | 202,600 | 43,463 ³ | - |
| British Columbia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 201,880 | 35,319(공립) ⁴ | - |
| Northwest Territories (노스웨스트 준주) | 3,220 | 647 ⁵ | - |
| Nunavut (뉴니부트 준주) | 3,430 | 700 | - |
| Yukon Territory (유콘 준주) | 1,740 | 374 | 30 |

주1 : 2003/2004 자료임.

2 : 3세 유아 포함된 수치로 보임.

3 : 3-4세 유아 유치원 이용이 가능하나 통계 자료 없음. 공립유치원 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및 사립형 공립유치원 등 각종 유치원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4 : 사립 유치원 통계 자료 없음.

5 : 반일제 이용 유아수와 종일제 이용 유아수의 합산 자료임.

자료 : Friendly et al. (2007).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Canada 2006.

4. 프로그램 운영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교체제의 일부인 캐나다의 유치원은 그 성격상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 유치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정해진 주는 노바스코샤 주와 뉴브론스윅 주뿐이며, 이 두 주를 제외한 주와 준주에서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와 준주에서 대부분의 만 5세 아동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온타리오 주에서는 junior kindergarten이라는 이름으로 만 4세아가 유치원 교육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이 외에 4세 이하의 유아 중 장애나 지체가 있는 유아와 같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유치원 대상으로 포함시켜 학교체제 내에서 담당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유치원에서는 하루에 2-3시간 가량의 반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종일제 프로그램을 주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는 4개 주 가량에 불과하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격일제로 유치원이 운영되기도 한다. 이에 프로그램 운영 시간 측면에서 볼 때 캐나다의 유치원은 대부분 미취업모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표 10〉 참조).

〈표 10〉 캐나다의 지역별 유치원 운영 특성(2006)

| 주/준주 | 특성 |
|---|---|
| Newfoundland and Labrador (뉴펀들랜드 & 라브라도 주) | 5세 대상 반일제 |
| Prince Edward Island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 5세 대상 반일제 등록 보육시설과 함께 운영 |
| Nova Scotia (노비스코샤 주) | 5세 대상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운영 제한적으로 4세 대상 프로그램 운영 의무교육 |
| New Brunswick (뉴브런스윅 주) | 5세 대상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운영 의무교육 |
| Quebec (퀘벡 주) | 5세 대상 종일제 4세 대상 반일제(pre-maternelle, passe-partout) |
| Ontario (온타리오 주) | 4, 5세 대상 반일제 농촌지역에서는 격일로 종일제 운영 불어권 유치원에서는 대부분 4세 프로그램 운영 |
| Manitoba (마니토바 주) | 5세 대상 제한적으로 4세 대상 프로그램 운영 |
| Saskatchewan (사스카추원 주) | 5세 반일제 제한적으로 3-4세 취약아동 대상 프로그램 운영(Pre-K) |
| Alberta (알버타 주) | 5세 반일제 제한적으로 2세반4세 취약아동 대상 프로그램 운영 |
| British Columbia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 5세 반일제 제한적으로 종일제 프로그램 운영 제한적으로 4세 대상 프로그램 운영 |
| Northwest Territories (노스웨스트 준주) | 5세 반일제 혹은 종일제 |
| Nunavut (누나부트 준주) | 5세 반일제 |
| Yukon Territory (유콘 준주) | 5세 종일제 및 반일제 제한적으로 4세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자료 : Friendly et al. (2007),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Canada 2006.

캐나다의 경우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없으며, 유치원 교육의 성과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를 선언적인 형태로 주/준주 별로 합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5세 대상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내용, 방법 및 평가를 초등교육과정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급별 유아수와 교사 대 유아 비율에 대하여 주정부 차원의 특별한 지침이나 조례를 제공하는 경우 또한 드물다. 이 때문에 유치원의 학급별 유아수는 주/준주별로 다른데, 일반적으로 한 학급의 유아는 약 19명에서 23명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만 보육시설법에 근거해서 유치원이 운영되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만이 학급별 교사수는 1명, 유아수는 12명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교사 대 유아 비율도 주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5세 유아의 경우 2001년도 현재 8:1에서 15:1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OECD, 2006).

5. 교사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교원양성과정을 포함한 4년제 대학교의 졸업생 또는 1년 교원양성 과정을 별도로 이수한 3년제 대학 졸업생에게 교사 자격이 부여된다.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교육법 및 조례에 교사 양성 시 요구되는 공통과목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주정부 중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원양성과정에 유아교육을 별도로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치원교사는 초등교육을 전공한 경우이다.⁶⁾ 유치원교사의 초등교사와 비슷한 자격기준으로 인해 유치원교사의 급여 및 처우는 초등학교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육교사보다 비교적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OECD, 2006).⁷⁾

6) 13개 주/준주 중 한 주만이 유치원 실습을 정규 과목으로 정하고 있음.

7) 유치원교육이 초등교육이 아닌 보육에 포함되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의 경우만 유아교육 관련 과정 이수를 요구하지 않음.

보육시설: 주정부의 관련법 하의 육아지원 서비스

1. 법적 근거 및 주무부처

캐나다 보육사업의 경우 주정부별로 제정되어 있는 보육관련법(Day Care Act, Child Care Facilities Act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등록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육 관련 업무를 주정부의 사회/지역 사회서비스부(Social/Community Services Ministries)에서 관장한다. 연방정부는 인적자원 및 사회개발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 Social Development)가 보육과 관련된 주무부처로 주정부와 공조하고 있으며, 이외에 제정부와 보건부 등에서 사안에 따라 관련 업무를 협조하고 있다.

한편 등록된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의 관리감독은 주정부조차 관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육시설의 경우 대부분 지역사회, 지역 내 단체, 기업이 자발

적으로 개별 보육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2. 비용 및 재정지원

캐나다 대부분의 주와 준주에서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정부의 재정이 지원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즉, 캐나다의 보육비는 기본적으로 수요자 부담으로 이용 아동의 부모가 보육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재정을 보육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특히 보육비는 주/준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2001년도 자료에 따르면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전일제 보육비용은 주별로 최소 376불 최대 600불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보육비의 경우 연령이 낮아질수록 더 증가하여, 만 1세의 종일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보육비는 518불부터 1,083불까지 큰 차이가 있다(〈표 11〉 참조).

〈표 11〉 캐나다의 보육료 및 정부지원액의 예

단위: CAD(Canadian dollar)

| 주/준주 | 전액 보육료 지원 가능 가구 연소득 ¹ | 차등 보육료 지원 가능 가구 연소득 | 1세 종일제 이용 | | 3세 종일제 이용 | |
|-------------------------------|----------------------------------|---------------------|-----------|-----------|-----------|-----------|
| | | | 평균 보육료 | 최대 정부 지원액 | 평균 보육료 | 최대 정부 지원액 |
| British Columbia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 167,64 | 23,100 | 705 | 585 | 494 | 368 |
| Alberta (알버타 주) | 20,520 | 31,680 | 523 | 475 | 508 | 380 |
| Saskatchewan (사스카추원 주) | 19,680 | 31,920 | 518 | 355 | 399 | 255 |

| 주/준주 | 전액 보육료 지원 가능 가구 연소득 ¹ | 차등 보육료 지원 가능 가구 연소득 | 1세 종일제 이용 | | 3세 종일제 이용 | |
|---|----------------------------------|---------------------|-----------|-----------|-----------|-----------|
| | | | 평균 보육료 | 최대 정부 지원액 | 평균 보육료 | 최대 정부 지원액 |
| Manitoba (마니토바 주) | 13,787 | 24,577 | 560 | 512 | 376 | 328 |
| Ontario (온타리오 주) | - | - | 783 | - | 514 | - |
| Quebec (퀘벡 주) | 0-4세 영유아 보육료는 1일 5불로 표준화되어 있음. | | | | | |
| New Brunswick (뉴브런스윅 주) | 15,000 | 23,100 | 482 | 401 | 418 | 357 |
| Nova Scotia (노바스코샤 주) | 16,812 | 24,540 | 565 | 324 | 488 | 324 |
| Prince Edward Island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 13,440 | 25,440 | 520 | 520 | 412 | 412 |
| Newfoundland and Labrador (뉴펀들랜드 & 라브라도 주) | 14,160 | 20,280 | 1,083 | 650 | 455 | 460 |
| Northwest Territories (노스웨스트 준주) ² | - | - | 600 | - | 600 | - |
| Nunavut (누나부트 준주) ³ | - | - | 577 | 700 | 577 | 700 |
| Yukon Territory (유콘 준주) | 20,424 | 31,104 | 570 | 500 | 498 | 450 |

주1 : 보육료 지원 가능 가구 연소득은 부모 1인당 아동 1명을 기준으로 함.

2 : 주 전체에서 통용되는 연소득 기준이 없음.

3 : 가구별 요구사정 후 지원액이 확정되며, 준주 전체에서 통용되는 연소득 기준이 없음.

4 : 가구별 요구사정 후 지원액이 확정됨.

출처 : Campaign 2000. (2003, December). Diversity or disparity? Child care policy and programs in Canada: Child care fee subsidy programs.

캐나다의 보육료는 기본적으로 부모부담이지만, 위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를 대상으로는 보육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모의 수입 및 자녀수에 따라 보육료의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고 있다. 특히 프린스 에드워드

드 아일랜드 주의 경우 보조금의 전액 지원액이 평균 지원액과 동일한 수준이며, 누나부트 준주의 경우는 수치상으로 보조금의 전액 지원액이 평균 지원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저소득층의 경우 비교적 교육료 부담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퀘백 주의 경우 4세 이하의 모든 교육시설의 이용 금액이 1일 5불로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조금 지원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⁸⁾

한편 교육비 지원 이외에도 장비비, 시설비 등의 지원이 주정부에 따라 개별 교육시설에 직접 지원되고 있다. 다음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시설별로 들어가는 재정지원의 규모는 연간 최소 1,093불부터 최대 4,644불에 이르는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평균 지원액이 3,259불에 불과하다.⁹⁾

<표 12> 캐나다의 지역별 등록교육시설 지원 규모(2005/2006)¹⁾

단위: CAD(Canadian Dollars)

| 주/준주 | 교육시설당 지원액 | 교육시설 지원액 |
|---|-----------|--------------------------|
| Newfoundland and Labrador (뉴펀들랜드 & 라브라도 주) | 2,183 | 12,322,000 ²⁾ |
| Prince Edward Island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 1,166 | 4,725,000 ³⁾ |
| Nova Scotia (노바스코샤 주) | 1,825 | 23,695,000 |
| New Brunswick (뉴브런스윅 주) | 1,707 | 22,475,000 |
| Quebec (퀘백 주) | 4,644 | 1,678,879,000 |

8) 교육료 지원 외에 Child Care Expense Deduction이라는 교육료 세금 공제 제도가 있음.

9) 일부 원주민 대상 프로그램에는 시설별 운영비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주/준주 | 교육시설당 지원액 | 교육시설 지원액 |
|-------------------------------------|-----------|---------------|
| Ontario (온타리오 주) | 2,323 | 534,100,100 |
| Manitoba (마니토바 주) | 3,322 | 86,327,000 |
| Saskatchewan (사스카추원 주) | 2,614 | 22,773,000 |
| Alberta (알버타 주) | 1,093 | 72,470,000 |
| British Columbia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 2,224 | 176,108,000 |
| Northwest Territories (노스웨스트 준주) | 1,666 | 2,542,000 |
| Nunavut (누나부트 준주) | 2,345 | 2,315,000 |
| Yukon Territory (유콘 준주) | 4,067 | 5,409,000 |
| 전체 | 3,259 | 2,644,140,000 |

주1 : 중앙정부에서 지원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2 : 담당 공무원의 추정치임.

3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의 경우 유치원이 보육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치원 관련 예산에 해당하는 3백2십만 불은 제외된 수치임.

자료 : Friendly et al. (2007).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Canada 2006.

3. 서비스 유형 및 이용 아동수

캐나다의 보육은 시설로 운영되는 보육시설(child care center)과 가정보육(family child care)으로 크게 구분된다. 보육시설의 경우 취업모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은 보통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나 대부분은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보육모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캐나다의 가정

보육은 시설로서 간주되지는 않으나, 주정부에 등록되어 관리감독을 받도록 되어있다.

다음의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현재 캐나다의 5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를 위한 등록보육시설은 387,562개소이며, 등록 가정보육은 113,636개인 것으로 보고되어, 캐나다의 보육은 시설에서 약 3/4 정도, 가정보육에서 1/4 정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등록 보육서비스의 정원은 525,198명으로, 이들 보육시설과 가정보육을 통해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영유아는 전체 5세 이하 영유아의 19.3% 정도이다.

<표 13> 캐나다 0세-5세 보육정원(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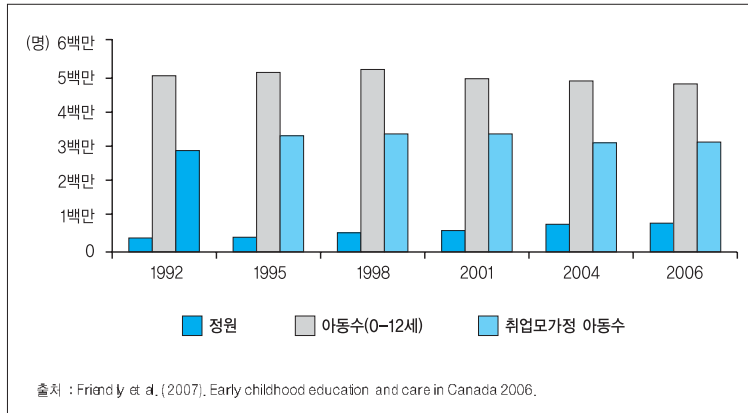
단위: 명, %

| 주/준주 | 등록종일제 및 반일제 보육시설 정원 | 등록 가정보육 정원 | 인구수 대비 보육시설 정원 |
|---|------------------------|---------------|-------------------|
| Newfoundland and Labrador (뉴펀들랜드 & 라브라도 주) | 4,769 | 248 | 165 |
| Prince Edward Island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 3,352 | 42 | 424 |
| Nova Scotia (노비스코샤 주) | 12,823 | 159 | 252 |
| New Brunswick (뉴브론스윅 주) | 12,893 | 270 | 294 |
| Quebec (퀘벡 주) | 111,094 | 89,011 | 256 |
| Ontario (온타리오 주) | 138,979 | 19,748 | 169 |
| Manitoba (마니토바 주) | 15,356 | 4,117 | 200 |

| 주/준주 | 등록종일제 및 반일제 보육시설 정원 | 등록 가정보육 정원 | 인구수 대비 보육시설 정원 |
|-------------------------------------|------------------------|---------------|-------------------|
| Saskatchewan (사스카추원 주) | 5,410 | 2,395 | 8.1 |
| Alberta (알버타 주) | 40,812 | 6,775 | 17.9 |
| British Columbia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 39,779 | 14,228 | 17.1 |
| Northwest Territories (노스웨스트 준주) | 883 | 352 | 21.0 |
| Nunavut (누나부트 준주) | 887 | n/a | 20.5 |
| Yukon Territory (유콘 준주) | 525 | 291 | 26.4 |
| 전체 | 387,562 | 113,636 | 19.3 |

· 주 : 반일제 보육시설은 주에 따라 유아원(nursery school)이 포함된 것을 의미함.
 자료 : Friendly et al. (2007),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Canada 2006.

특히 12세 미만 전체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의 정원을 살펴본 [그림 6]을 보면, 지난 1992년 통계와 비교하여 볼 때 15년에 걸쳐 약 4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그간 보육서비스의 공급이 매우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4년 보육시설 정원은 745,935 명으로, 지난 2년간 증가한 정원수는 65,337명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누나부트 준주와 유콘 준주에서는 2004년 대비 2006년 보육시설 정원이 적은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은 최근에 들어서 보육서비스의 공급이 정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6] 캐나다의 아동수, 취업모가정 아동수 및 보육서비스정원(1992-2006)

보육시설 이외의 주정부의 관련법 하의 육아지원 서비스: 유아원과 원주민 대상 프로그램

- 유아원(nursery school 및 preschool): 미취업모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아원은 주로 만 2-5세 아동을 대상으로 반일제로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의 유아원은 대부분 지역사회의 단체에 의해 운영되며, 유아원에 다니는 장애나 지체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기도 한다.
- 캐나다 원주민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Aboriginal child care program) 및 헤드스타트(Aboriginal Head Start program): 몇몇 주에서는 원주민을 위한 별도의 보육 프로그램과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원주민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First Nations(원주민 인디언 부족)는 주정부가 아닌 자체적으로 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4. 설치 및 관리감독

모든 주와 준주는 보육시설에 대한 설치 및 등록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주별로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가정보육에 관해서는 주정부에서 설치 및 관리감독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도 하나, 관련 업무를 대행사를 허가(licensed agencies)하여 이를 통해 관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가정보육의 경우 비교적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Friendly et al., 2007). 한편 방과후 보육은 대부분의 주에서 보육관련 법규 하에 관장되고 있으며, 4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원의 경우 6개 주/준주에서는 보육 관련 법규와 함께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등록보육시설은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영리로 운영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스웨스트와 누나부트 준주, 사스카추완 주, 마니토바 주의 경우 등록보육시설 거의 전수가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리보육시설이 전체 등록보육시설의 과반수인 경우는 뉴펀들랜드/라브라도,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뉴브론스윙 주 정도이다.

비영리시설의 운영주체는 대부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조직이나 부모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운영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는 몇몇 주를 제외하고는 매우 드물다.¹⁰⁾ 반면 영리시설의 경

10) 온타리오 주는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퀘벡 주는 방과후 보육에 한해서 초등학교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우는 영리기관인 체인 또는 프랜차이즈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시설
과 중소기업 또는 기타 사업체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표 14〉 캐나다 등록보육시설의 유형(2006)¹

단위: 개소, %

| 주/준주 | 비영리 및 정부지원시설 | 영리시설 | 비영리시설 비율 |
|--|----------------------|--------|-----------------|
| Newfoundland and Labrador (뉴펀들랜드 & 라브라도 주) | 1,676 | 3,718 | 31 |
| Prince Edward Island ²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 2,034 | 2,605 | 44 |
| Nova Scotia (노바스코샤 주) | 6,924 | 5,899 | 54 |
| New Brunswick (뉴브런스윅 주) | - | - | 36 ³ |
| Quebec (퀘벡 주) | 236,001 ⁴ | 36,521 | 87 |
| Ontario (온타리오 주) | 161,233 ⁵ | 48,894 | 77 |
| Manitoba (마니토바 주) | 20,559 | 1,308 | 94 |
| Saskatchewan (사스카추원 주) | 6,292 | 25 | - |
| Alberta (알버타 주) | 30,145 | 28,748 | 51 |
| British Columbia ⁶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 - | - | - |
| Northwest Territories (노스웨스트 준주) | 1,173 | 0 | 100 |
| Nunavut (누나부트 준주) | 987 | 0 | 100 |

| 주/준주 | 비영리 및 정부지원시설 | 영리시설 | 비영리시설 비율 |
|----------------------------|--------------|---------|----------|
| Yukon Territory (유콘 준주) | 713 | 326 | 69 |
| 전체 | 467,737 | 128,044 | 79 |

주1 : 일부 주의 수치는 반일제와 종일제가 구분되어 집계되지 못하였음.

2 : 반일제 유치원은 제외된 수치임.

3 : 영리와비영리의 구분은 가능하지 않으나, 그 비율은 추정 가능함.

4 : 방과후보육이 포함된 2004년도 수치임.

5 : 주정부의 직영 보육시설이 포함된 수치임.

6 : 관련 자료 없음.

자료 : Friendly et al. (2007).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Canada 2006.

5. 교사

캐나다의 보육교사는 유치원 교사와는 달리 4년제 대학교 졸업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대부분의 주와 준주에서 2년제 대학 유아교육 전공자를 요구하거나 유아교육 관련 1년 과정 수료자로 한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의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주에서는 시설 내 보육교사에게 모두 이상과 같은 자격을 요구하는 대신 전체 보육담당 종사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자격 소지자로 구성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교사 자격에 대한 기준 없이 시설별로 전체 교사 중 적어도 2/3는 2년제 대학 유아교육 전공자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부 주와 준주에서는 이와 같은 교사 구성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

〈표 15〉 캐나다의 지역별 보육교사 자격/구성기준

| 주/준주 | 기준 |
|---|---|
| Newfoundland and Labrador (뉴펀들랜드 & 라브라도 주) | 1년 유아교육 전공과정 수료 및 1년 교사 경력을 영유아 집단 별로 1명 배치 |
| Prince Edward Island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 1년제 유아교육 전공 학위 및 1년 교사 경력을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별로 1명 배치 |
| Nova Scotia (노바스코샤 주) | 유아교육 훈련 프로그램 이수 또는 동등 자격 소지자를 보육담당 종사자의 2/3 이상으로 배치 |
| New Brunswick (뉴브런스윅 주) | 1년 유아교육 전공과정 수료 또는 동등 자격 소지자를 보육담당 종사자의 1/4 이상으로 배치 |
| Quebec (퀘벡 주) | 2/3년제 또는 4년제 유아교육 학위 소지자를 보육담당 종사자의 2/3 이상으로 배치 |
| Ontario (온타리오 주) | 주에서 인증하는 전문대학 유아교육 전공 학위 또는 동등 자격 소지자를 영유아 집단 별로 1명 배치 |
| Manitoba (만니토바 주) | 주에서 인증하는 전문대학 유아교육 전공 학위 소지자를 보육담당 종사자의 2/3 이상으로 배치 |
| Saskatchewan (사스카추원 주) | 보육담당 종사자의 30% 이상을 1년 유아교육 전공과정 수료자로 구성 |
| Alberta (알버타 주) | 1년 유아교육 전공과정 수료자를 보육담당 종사자의 2/3 이상으로 배치 |
| British Columbia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 담당 영유아의 연령별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 (infant educator, toddler education, childhood educator)를 집단별로 1명 배치 |
| Northwest Territories (노스웨스트 준주) | 19세 이상 |
| Nunavut (누나부트 준주) | 19세 이상 |
| Yukon Territory (유콘 준주) | 보육담당 종사자의 20%는 2년제 영유아 발달 훈련과정 이수자, 보육담당 종사자의 30%는 1년제 영유아 발달 훈련과정 이수자로 구성 |

자료 : Friendly et al. (2007).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Canada 2006.

한편 이상과 같은 기준은 보육시설에 한다는 것으로, 가정보육을 담당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이보다 더 낮은 것이 일반적으로, 주로 연령과 응급처치를 중심으로 한다. 이에 가정보육 종사자의 경우 영유아 관련 교육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자격기준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는 경우에도 30-60시간가량의 관련 과목 이수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Friendly et al., 2007).

맺음말

이 상과 같이 캐나다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서로 구별된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하여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대상의 확대가 보편화되면서 점차 두 영역간의 기능적 차이는 감소하고 유사성이 증가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캐나다의 유아교육은 학교체제에 포함되어 만 5세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의 형태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미국의 육아지원체제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대부분의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을 다닌다는 점에서 캐나다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연령별로 이원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주/준주별로 각기 지역에 맞는 고유한 정책을 추진하는 캐나다의 특성상 육아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몇 주정부의 행보를 살펴보면 향

후 캐나다의 육아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 중 많은 학자들이 선도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온타리오를 중심으로 유치원 대상 연령이 점점 하향화되고 있는 것은 주정부의 혜택을 받는 유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대상 연령이 중복된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육 이원화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캐나다에서도 동일하게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러한 이원화의 문제는 2000년대 초반에 OECD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주제검토 사업(Thematic Review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ies)의 일환으로 검토단이 권고안을 통해 지적한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하다(OECD, 2004b, 2006). 실효성 있는 육아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제도적 통합은 주요 육아선진국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이다(OECD, 2004a,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고가 캐나다 정부에 의해 육아지원정책의 수립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실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이 같은 캐나다의 육아지원 정책의 특성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은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은 육아지원과 관련한 해외 주요 연구에서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다(OECD, 2001, 2006).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2년 인적자원개발회의의 발의로 10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유아교육·보육 발전기획단이 구성되어 범정부적 유아교육·

보육 정책 방안이 마련된 바 있다. 이러한 범정부적이고도 통합적인 접근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는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캐나다의 육아지원 정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육아지원과 관련된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모로 급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관련 정책이 그 변화를 앞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현장의 육아지원서비스는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의 방향과는 별도로 주변의 요구에 맞게 적응하고 만다. 이에 우리나라의 육아지원 정책 또한 지속적인 관련 연구와 논의의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과 조정을 통해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Campaign 2000. (2003, December). *Diversity or disparity? Child care policy and programs in Canada: Child care fee subsidy programs*. Toronto: Campaign 2000. http://www.campaign2000.ca/ci/issue/CCsubsidy_ISSUE.pdf에서 2008년 9월 20일 인출.
- Campaign 2000. (2008). *2007 Report card on child and family poverty in Canada*. http://www.campaign2000.ca/rc/rc07/2007_C2000_NationalReportCard.pdf에서 2008년 10월 7일 인출.
- Canadian Council on Social Development. (2002). *The progress of Canada's children, 2002*. Ottawa: Author.
- Doherty, G., Friendly, M., & Beach, J. (2003). *OECD thematic review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anadian background report*. Ottawa: Her Majesty the Queen in Right of Canada.
- Friendly, M. (2008). Building a strong and equal partnership between child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2(1), 39-52.
- Friendly, M., Beach, J., Ferns, C., & Turiano, M. (2007).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Canada 2006*. Toronto: 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2002). *Maternity, parental and sickness benefits*. http://www.hrdc-drhc.gc.ca/ae-ei/pubs/special_e.shtml에서 2008년 9월 14일 인출.
- Larose, F., Témisse, B., Bedard, J., & Karsenti, T. (2001, May). *Preschool education training: Skills for adapting to a changing society*. Paper prepared at the 2001 Pan-Canadian Education Research Agenda Symposium, Quebec City, Canada.

OECD. (2001). *Starting Str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ummary report of the matic review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Author.

OECD. (2004a). *Starting Strong I*. Paris: Directorate for Education, OECD.

OECD. (2004b).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Canada country note*. Paris: Directorate for Education, OECD.

OECD. (2006). *Starting Strong II*. Paris: Directorate for Education, OECD.

Prochner, L. (2000). A history of early education and child care in Canada, 1820-1966. In L. Prochner & N. Howe (Eds.),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in Canada* (pp. 11-65). Vancouver: UBC Press.

Statistics Canada. (2002). *Age groups of children at home and family structure for census families in private households*. <http://www.statcan.ca/english/IPS/Data/95F0316XCB2001002.htm>. 에서 2008년 12월 11일 인출.

Statistics Canada. (2003). *Canada's ethnocultural portrait: The changing mosaic*. <http://www.statcan.ca/english/IPS/Data/96F0030XIE2001008.htm>에서 2008년 10월 4일 인출.

Statistics Canada. (2006a). *Aboriginal Identity for the population of Canada, by provinces and territories*. <http://www40.statcan.gc.ca/l01/cst01/demo38a-eng.htm>에서 2008년 10월 4일 인출.

Statistics Canada. (2006b). *Population and dwelling counts, for Canada, provinces and territories, 2006 and 2001 censuses - 100% data*. <http://www12.statcan.ca/english/census06/data/popdwel/Table.cfm?T=101>에서 2008년 10월 4일 인출.

Statistics Canada. (2006c). *Mobility status 5 years ago, for Canada, provinces and territories, 2006 census - 20% data*. <http://www12.statcan.ca/english/census06/data/topics/ListProducts.cfm?Temporal=2006&APATH=3&THEME=70&FREE=0&SUB=700&GRP=1>에서 2008년 11월 27일 인출.

Statistics Canada. (2007a). *Canadian demographics at a glance: Total fertility rate in Canada, 1926 to 2005*. <http://www.statcan.gc.ca/pub/91-003-x/2007001/figures/4129893-eng.htm>에서 2008년 9월 26일 인출.

Statistics Canada. (2007b). *Components of population growth by provinces and territories: Table 051-0004*. http://cansim2.statcan.ca/cgi-win/cnsm.cgi.exe?Lang=E&RootDir=CII/&ResultTemplate=CII/CII_pick&Array_Pick=1&ArrayId=051-0004에서 2008년 9월 10일 인출.

Statistics Canada. (2008). *Components of population growth, by provinces and territories: Table 051-0004*. <http://www40.statcan.gc.ca/l01/cst01/demo04a-eng.htm>에서 2008년 12월 11일 인출.

신나리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학사,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졸업(박사)
전 연세대학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교사
현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조혜주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졸업(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현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원

세계 육아정책동향시리즈 6

캐나다의 육아지원정책

발행인 · 조복희
발행처 · 육아정책개발센터
편역 · 신나리 · 조혜주
발행일 · 2008년 12월
주소 · 110-734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http://www.ki-ocae.re.kr>
대표전화 · 02) 730-7070
팩스 · 02) 730-3313
인쇄 ·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代)

ISBN 978-89-92396-26-4 93330

정가: 5,000원